

## 원자력법령안 입법예고

### ● 과학기술처공고 제1997-17호

원자력법시행령·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7년 4월 18일  
과학기술처장관

### 원자력법시행령·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입법예고

#### 1. 개정취지

원자력법중 개정법률이 1996년 12월 30일 공포(법률제5233호)됨에 따라 개정 원자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국내의 환경변화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골자

원자력법시행령중개정령(안)

- 가.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방안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
- 나. 기존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하기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으로 변경함
  -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·운영허가
  - 교육용 및 연구용원자로의 건설·운영허가
  - 외국원자력선의 운영허가
  - 사용후 핵연료사업의 지정
- 다. 방사선위해도가 적은 방사성동위원소의신고 사용자에 대하여 규제 합리화차원에서 정기검사·안전관리책임자 선임·건강진단의 의무를 생략함.
- 라. 원자력관계시설의 관리구역에 상시출입하면서 방사능오염의 제거, 방사성폐기물의 수거·처리·운반의 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등록기

준을 구체적으로 정함

- 마.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폐기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함.
- 바.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공람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구체적인사항을 정함.

원자력법 시행규칙중개정령(안)

- 가. 부지사용승인신청·건설허가신청시에 첨부하는 방사선환경평가서등에 관한 구체적절차를 정함.
- 나.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방사선안전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
- 다.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대상범위를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하는 범위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함.
- 라.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~3년에서 3~5년으로 완화함

#### 3. 의견제출

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5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처장관(참조: 원자력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및 주소
- 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처 원자력안전과에 문의 또는 과학기술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ost.go.kr>)의 전자계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